

2022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4조, 「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및 「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, 재심사, 재참여) 참여기업 선정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4. 28.

충청남도지사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2022년 제2차 충청남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
나. 참여자격(요건)

- 소재지 :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
- 자 격 : 2022. 3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, 예비(지역형 및 부처형)사회적기업

다. 지원내용 : 2,107,260원(* 1일 8시간, 월 209시간 기준)

-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(1,914,440원) + 4대보험료(192,820원)

라.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

※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한함

마. 지급수준 : 일자리창출사업 예비/인증 ‘지원비율’ 적용
(‘22년 약정부터 일률적용)

- ① 예비사회적기업 : 1~2년차 각 50%(취약계층+20%)
- ② 사회적기업 : 1~3년차 각 40%(취약계층+20%)

- ※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
- ※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%로 한정
- ※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,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+20% 적용 (단,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)

바. 지원기간 :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

-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

※ 단, 지원기간 중 인증·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

<최대지원기간>

❶ 예비 사회적기업 :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

❷ 인증 사회적기업 :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



2 참여자격 (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름)

가.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(신규)

○ 신청대상

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충청남도지사 지정한 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”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”

※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

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

-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②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 -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,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
-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
 - **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**
 - 다만, 특정취약계층(중증장애인)을 총 근로자의 20%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
-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**고용계획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기업**
 - 다만,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(예비)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%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(별표1)
-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**근로자 고용 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**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(별표4)
 -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(감원)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
 - 단,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
- ⑥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
-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(가사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도우미, 장애아동재활치료,

장애인활동보조, 노인돌보미, 지역사회투자사업 등)

- 단,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
- ⑧ 지속적,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,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-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나.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(재심사)

○ 신청대상

-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
-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

○ 재심사 제외 대상

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

- ①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
- ② “지원기간 중” 임금체불 발생 기업
 -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 ‘지원금신청관리’ 메뉴에서 해당기업 ‘임금체불’ 정보를 통해 확인
 - ※ 등록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되었으나, 임금청산이 되었거나 법위반 사실 없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
- ③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
 -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 ‘기업정보관리’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

다.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(재참여)

○ 신청대상

-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, ‘사회적가치 지표’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가치 수준이 ‘탁월 또는 우수’ 하다고 확인된 기업

○ 지급수준 :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~ 3년차 지원방식 적용

- ※ 일자리 유지여부 판단(시군) :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(기존근로자+참여근로자)를 기준으로 유지여부 확인(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여부 확인대상이 아님)
- ※ 사회적가치 수준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)을 통해 측정
- ※ 사회적가치 지표 배점(60점) 중 탁월 54점 이상, 우수 45점 이상

3 제출서류

<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>

-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 신고내역(부가세신고서), 거래처별합계표(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)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
 -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
 -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
- ※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(스캔을 통한 전자화)

가. 2022년 (신규)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(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)

- ① 사업참여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
- ② 사업계획서 [별지 제3호서식]
-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(최근 6개월이내 실적)
 -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[별지 제6호서식],
 - 관련 증빙자료(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[별지 제6호의1호서식] 등)
-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[별지 제4호의2 서식]
- ⑤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의 e-러닝 이수내용(제출불요,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같음)
 - ※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('21.1.1. 신설과정)을 이수하여야 함 (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-러닝 이수도 인정)
 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 - ※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- ⑥ 사회적가치(SVI) 측정보고서[별지 제7호서식], 측정지표 서식 3, 6,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
-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
- ⑧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5호서식](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)
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(시스템 동의 필요)
- ⑨ 인사·노무분야 제출서류(전월말 기준)
 - 근로계약서(기간제포함), 근로자명부, 연월차대장, 임금대장, 출퇴근기록부

※ 21년도 결산 재무재표, '21년 가결산(매출실적) 재무재표 제출
(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

나. 2022년 (재심사)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(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)

- ① 사업신청서[별지 제2호서식]
- ② 사업계획서[별지 제3호서식]
-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(최근 6개월이내 실적)
 -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[별지 제6호서식],
관련 증빙자료(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[별지 제6호의1호서식] 등)
-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
- ⑤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5호서식](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)
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(시스템 동의 필요)
- ⑥ 인사·노무분야 제출서류(전월말 기준)
 - 근로계약서(기간제 포함), 근로자명부, 연월차대장, 임금대장, 출퇴근기록부
- ⑦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[별지 제4호의2 서식]
- ⑧ 사회가치(SVI) 측정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, 측정지표 서식 3, 6번
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
- ⑨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(해당기업만) *심사시 가점 사항

※ 21년도 결산 재무재표, '21년 가결산(매출실적) 재무재표 제출
(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

다. 2022년 (재참여)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(모든 제출서류 시스템 제출)

- ① 사업신청서[별지 제2호서식]
- ② 사업계획서[별지 제3호서식]
-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증서류(최근 6개월 이내 실적)
 -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[별지 제6호서식],
관련 증빙자료(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[별지 제6호의1호서식] 등)
-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[별지 제4호의2 서식]
- ⑤ 다음의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
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의 e-러닝 이수내용(제출불요,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같음)
 - ※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('21.1.1. 신설과정)을 이수하여야 함
(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-러닝 이수도 인정)
 -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,
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
(5시간 이상 교육과정, 공식 인증된 수료증)
 - ※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- ⑥ 사회가치 측정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 및 증빙자료 => 진흥원 의뢰
-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
- ⑧ 유급근로자 명부[별지 제5호서식](취약계층 증빙자료 포함)
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(시스템 동의 필요)
- ⑨ 인사·노무분야 제출서류(전월말 기준)
 - 근로계약서(기간제포함), 근로자명부, 연월차대장, 임금대장, 출퇴근기록부

※ 21년도 결산 재무재표, '21년 가결산(매출실적) 재무재표 제출
(전문가(회계사, 세무사 등)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)

✓ **주의사항** :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,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됨

4 신청기간 및 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22. 4. 28.(목) ~ 2022. 5. 12(목) 18:00까지(시스템 입력)

※ 온라인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시스템상 '신청서 제출'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접수시 신청 불인정(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)

나. 신청방법 : 시스템 입력 및 시군 제출

-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seis.or.kr>)

※ 통합정보시스템 문의: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(☎ 1661-4006)

다. 사업설명회

○ 일 시: (1차) '22.5.2(월), 14:00~16:00 / (2차) '22.5.3(화), 10:00~12:00

○ 내 용: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기초(SV)측정보고서 작성 일지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이해

- 회의 시작 30분전까지 입장가능

○ 접속방법 : 일반pc <https://www.zoom.us>

모바일 zoom앱 설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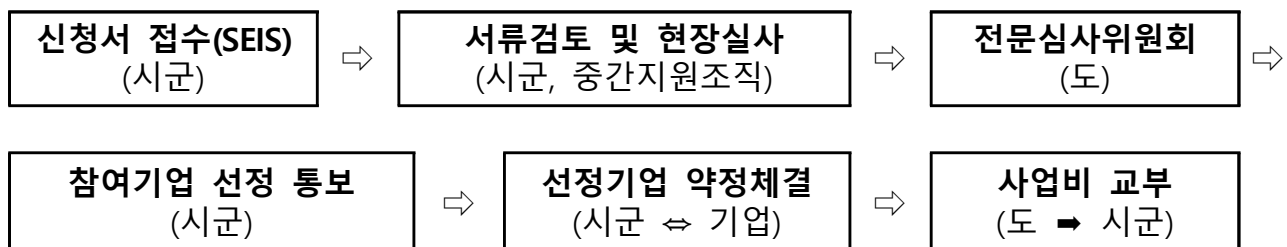
- 회의 ID: 941 415 2012 / 암호: 0414152012

- 링크 : <https://us02web.zoom.us/j/9414152012?pwd=OEg0cXJHeW9iREJLRm1kYytheDJ2UT09>

○ 참석대상 :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

5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

가. 선정절차



※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기업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(요건 미충족 시 제외)

나. 결과통보 :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

6 유의사항
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(제출)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,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.
-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,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,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·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2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.

7 문의처

-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(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상담 및 컨설팅) 권역별 지원기관

기관명	전화번호
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	041-415-2012
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관련 문의

기관명	전화번호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	1661-4006

- (도) 담당부서

기관명	전화번호
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	041-635-3973

- (접수) 시군 담당부서

시·군	부	서	전화번호	시·군	부	서	전화번호
천안시	일	자리경제과	(041) 521-5612	금산군	지	역경제과	(041) 750-2659
공주시	주	민공동체과	(041) 840-8598	부여군	경	제교통과	(041) 830-2264
보령시	지	역경제과	(041) 930-3727	서천군	지	역경제과	(041) 950-4126
아산시	사	회적경제과	(041) 530-6049	청양군	사	회적경제과	(041) 940-4074
서산시	시	민공동체과	(041) 660-2590	홍성군	경	제과	(041) 630-1353
논산시	뉴	딜경제과	(041) 746-6028	예산군	경	제과	(041) 339-7283
계룡시	일	자리경제과	(042) 840-2583	태안군	주	민공동체과	(041) 670-6161
당진시	공	동체새마을과	(041) 350-3186				